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‘조건부 압류금지 재산’을 ‘압류금지 재산’으로 통합하고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(안 제40조 및 제41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박 병 섭)